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4.

발 의 자 : 서천호 · 김선교 · 최보운
이만희 · 이달희 · 김예지
박덕흠 · 조은희 · 진중오
정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·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,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, 어로·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.

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·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영림·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,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호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마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영림업, 벌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에서 발생하는
소득 전액

자.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에서 발생
하는 소득으로서 연 10억원 이하의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	제12조(비과세소득)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. ~ 라. (생 략)	2. -----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마. <u>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(林地)의 임목(林木)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</u> <u>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</u> <u>이하의 금액. 이 경우 조</u> <u>립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</u> <u>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한다.</u>	<삭 제>
바. · 사. (생 략)	바. · 사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아. <u>영림업, 벌목업 등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에서</u> <u>발생하는 소득 전액</u>
<신 설>	자. <u>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</u> <u>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</u> <u>연 10억원 이하의 금액</u>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